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51

발의연월일 : 2024. 10. 11.

발 의 자:김희정・김소희・나경원

권영진 • 조승환 • 서범수

이달희 · 김태호 · 배현진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명 연예인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현재 42.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 적발건수역시 2019년 57,200명에서 2023년 55,700명으로 큰 변화가 없고, 전체음주운전 적발건수 또한 2019년 130,772건에서 2023년 130,150건으로계속 유지되고 있음.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

호 신설).

법률 제 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까지의"를 "제12호까지의"로 한다.

- 1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 다만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	제2조(정의)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u>		
	<u>항을 10년 이내에 2회 이상</u>		
	<u>위반한 경우</u>		
<u><신 설></u>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의 죄. 다만 사망에 이른 경		
	<u>우에 한정한다.</u>		
<u>11.</u> 제1호부터 <u>제10호까지의</u> 죄	<u>13.</u> <u>제12호까지의</u>		
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